#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93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김승수 · 김기웅 · 우재준

이상휘 • 권영진 • 최은석

강민국 · 조승환 · 김선교

김은혜 · 신동욱 · 김형동

의원(12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오며 2022년 기준 전체 공연시장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문화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서 뮤지컬로최초 제작되는 창작뮤지컬이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공연에서 음원, 영상 및 영화 등 2차적저작물로의 확장 가능성이 방대한 뮤지컬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뮤지컬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연구기관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함(안 제6조).
- 다. 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수출 및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행사·축제 등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 및 뮤지컬 관람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제10조).

- 사.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2조).
- 아. 뮤지컬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함(안 제13조).

##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뮤지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뮤지컬 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 및 콘텐츠 문화강국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뮤지컬"이란 음악, 대본, 연기, 안무 등의 예술적 요소가 조명, 음향, 영상 등의 무대기술과 결합되어 극 양식으로 전개되는 공연 을 말한다.
- 2. "뮤지컬산업"이란 뮤지컬의 기획, 창작, 제작, 유통, 소비, 수입, 수출과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 한다.
- 3. "창작뮤지컬"이란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둔 자(법인을 포함한다) 가 제작하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뮤지컬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뮤지컬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뮤지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뮤지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뮤지컬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뮤지컬산업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3. 뮤지컬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 4.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5. 뮤지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6. 창작뮤지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7. 뮤지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 8. 뮤지컬산업 관련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 9. 뮤지컬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 · 연구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뮤지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12조에 따른 뮤지컬진흥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뮤지컬

산업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①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뮤지컬산업의 활성화 지원 등) ① 정부는 뮤지컬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에 기여하는 뮤지컬산업 관련사업자 및 단체에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와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기획자, 제작자, 실연자 등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
  - 2.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강화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뮤지컬 관련 단체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7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정부는 뮤지컬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인터넷 등 전자기술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 2. 뮤지컬 관련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창작뮤지컬의 수출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공연권 판매 및 해외 공연 등 수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뮤지컬의 온라인 공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공연장 제공, 경비의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뮤지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뮤지컬 관련 행사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뮤지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뮤지컬 관련 행사 또는 축제를 기획·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0조(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 산업 및 뮤지컬 관람 여건에 대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 연장의 설치·운영, 뮤지컬 배급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 기반 창작뮤지컬의 진흥을 위하여 창작뮤지컬 관련 사업자, 종사자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1조(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 등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뮤지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9조,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준용한다.
- 제12조(뮤지컬진흥위원회) ① 뮤지컬산업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뮤지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뮤지컬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2. 제5조에 따른 뮤지컬산업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 3. 제6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정책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에 따른 지역 뮤지컬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뮤지컬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연예술 및 뮤지컬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

- 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성별, 연령, 분야 및 전문성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 ⑥ 그 밖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정부는 뮤지컬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하는 기관(이하 "뮤 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뮤지컬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뮤지컬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3. 뮤지컬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연수 지원
  - 4. 뮤지컬의 제작 유통 활성화
  - 5. 창작뮤지컬의 해외진출 지원
  - 6. 뮤지컬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활용
  - 7. 뮤지컬산업의 투자 및 융자 활성화 지원
  - 8. 뮤지컬 관련 행사 · 축제 등의 육성 및 지원
  - 9. 그 밖에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뮤지컬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

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뮤지컬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